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단332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411,7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1,7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 3. 11.자 2016차전72219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C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다. 위 채권은 2021. 8. 19. 기준으로 원금 4,138,082원, 지연이자 15,273,687원, 합계 19,411,769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8. 4. 1. 사망하여 D의 자녀들인 C, E, F 및 피고가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6. 25. 접수 제1643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척기간 경과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2018. 4. 1. 본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4) 이 사건 원고가 2018. 4. 1. 본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2018.

4.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인데 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위 19,411,769원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C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이다.

라.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1) C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병원비 등 제반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C를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탕감하는 의미에서 C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피고를 상대로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843)을 제기한 사실, 담당 법원은 피고는 위 회사에게 2019. 2. 28.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9. 2. 21. 위 회사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C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보다 7,000,000원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어 이는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1) 가액배상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H조합 앞으로 피담보채무 합계 66,809,700원의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2011. 10. 20. 취득가액이 18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적어도 185,000,000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갑 제7호증) 기재 가액인 93,9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기재 가액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가액을 100% 반영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위 각 부동산의 가액 185,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809,700원을 공제한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9,547,575원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다.

5) 한편, 피고는 위 29,547,575원 중 7,000,000원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22,547,57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8. 4.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수인 19,411,7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11,7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 대 95.9㎡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56.25㎡ 2층 50.41㎡

- 이상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관할,

소유자 지분 중 일부 상속인 지분 전부 (4분의 1) -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